

[로스쿨 소식]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연구용역 결과 공개’ 검토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다음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여부를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4월 14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는 24일 이후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여부를 재검토 하겠다.”며 합격자가 발표되면 기존의 비공개 사유는 사라지기 때문에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 24일 이후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합격자 결정 심의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니 합격자 결정 심의 업무가 마무리되면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지만, 변호사시험 발표일 전까지는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 같아 씁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해 지난 2월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소속 로스쿨생 등은 각각 법무부에 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모두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당시 비공개 사유로 연구용역 결과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합격자 결정 심의 업무의 기초가 되는 바, 이를 공개할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잘못된 기대 부여,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압력, 위원에 대한 청탁 등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연구용역 결과에 담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해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순석)가 주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이 연구용역의 결과 내용 일부가 발표자 등을 통해 공개돼 법

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협이 대립각을 세우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출처/법률신문)